

## 등록금심의위원회규정

제정 2011.02.14      개정 2012.03.01  
 개정 2017.08.14      개정 2019.01.29  
 개정 2020.03.02      개정 2023.03.03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고등교육법 제11조 제3항에 의거 등록금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기능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03.03.>

**제2조(기능)** 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해당학년도 등록금 책정에 관한 사항
2. 교비회계 예·결산에 관한 사항<신설 2017.08.14>
3. 위원회 제 규정의 제·개정이나 폐지에 관한 사항
4. 기타 위원장이 등록금 책정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상 1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9.01.29>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교직원, 학생, 관련전문가 중에서 각각의 구성단위를 대표할 수 있는 자로 구성하되, 학부모 또는 동문을 포함할 수 있으며 구성비율은 「고등교육법 제11조제3항」에 따른다.<개정 2019.01.29., 2023.03.03.>
2. 기획처장, 교학처장, 사무처장, 기획예산팀(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그 밖의 위원은 동규정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라 총장이 위촉한다.<개정 2019.01.29., 2020.03.02., 2023.03.03.>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처장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통할한다.<신설 2019.01.29>

⑤ 위원장이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신설 2019.01.29>

**제4조(임기)** ① 위원회의 위원장과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회의 다른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5조** <삭제 2019.01.29>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10분의 4이상이 요청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며 회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종 매체(서면, 유선, 메세지, 이메일 등)를 통하여 회의 개최 7일전에 위원에게 통보하고, 회의 개최 5일전까지 회의자료를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개정 2019.01.29., 2023.03.03.>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회의개최 7일 전에 개최일정, 개최목적 등을 교내 매체를 통하여 구성원들에게 사전에 공개한다.<신설 2019.01.29>

④ 위원회는 회의결과 요약내용 등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회의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이내에 학교 홈페이지에 1년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신설 2019.01.29>

1. 회의록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2. 공개될 경우 위원회의 심의의 공정성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3. 그 밖에 공개하기에 적당치 아니하다고 위원회가 의결한 사항

⑤ 제3항 단서에 따라 회의록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않을 때에는 비공개사유 및 비공개기간을 공시하여야 하며, 비공개사유가 해소되거나 비공개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 즉시 공개하여야 한다.<신설 2019.01.29.>

⑥ 위원장은 회의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이 아닌 교직원, 학생, 관련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신설 2023.03.03.>

**제7조(간사)** ①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위원장을 보좌하고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위원회의 간사는 기획처 담당자로 한다.

**제8조(서면의결)** 위원장은 불가피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의안을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9조(등록금 자료의 제출)** ① 위원회는 등록금을 적정하게 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총장에게 등록금 산정 근거 자료, 학교 회계운영 현황자료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학교의 장은 요청받은 자료를 지체 없이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에 누락이 있거나 보완이 필요한 경우 학교의 장에게 자료를 추가하거나 보완하여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간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운영세칙)**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0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08월 14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